

**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관련
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**
(년 기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	처리기간	즉시
--	------	----

1. 신고자 인적사항

① 성 명(법 인 명)	② 사업자등록번호
③ 업 태	④ 종 목

2. 매입가액 합계

구분	⑤ 건수	⑥ 매입가액	⑦ 매입세액공제액
계산서 수취분			

3.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

공제대상세액		이미 공제받은 세액			⑬ 공제(납부)할 세액 (= ⑨-⑩)
⑧ 공제율	⑨ 공제대상세액	⑩ 합계	⑪ 예정 신고분	⑫ 월별 조기분	

4. 계산서 수취 명세

번호	⑭ 공급자		⑮ 매입가액	⑯ 비고
	상호(법인명)	등록번호		
합계				
1				
2				
3				
4				
5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25제2항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* 구비서류: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.

2. 매입가액 합계란

(⑤ ~ ⑦)

⑤: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
의 건수 합계를 적습니다.

⑥: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
의 매입가액 합계를 적습니다.

⑦: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관련 권리 등의 공급에 대해 발급한 계산서 수취분
의 매입세액공제액 합계를 적습니다.

※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: 109분의9

3.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란

(⑧ ~ ⑬)

※ 이 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.

⑧: 매입세액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 109분의9를 적습니다.

⑨: 매입가액(⑥)에 공제율(⑧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

⑩: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
⑬: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
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(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서식) 제3쪽
(42)번 의제매입세액란에 음수(△)로 적습니다.

4. 계산서 수취 명세란

(⑭ ~ ⑮)

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공급
하고 발행한 계산서 상에 적힌 내용을 건별로 적습니다.